

영국의 집회·시위현장에서의 채증활동과 관련한 법제

정보신청기관 : 경찰청

I. 영국의 집회 및 시위 관련 법제의 개요

의회를 중심으로 민주주의가 발달한 영국은 각종 정치적 갈등 때문에 집회와 시위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정치적 이유뿐만 아니라 훌리건(hooligan)과 같은 스포츠 경기장에서의 집단 폭력 또는 빈민가의 폭동 역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에 따라 영국의 법체계는 집회와 시위의 통제와 관련하여 경찰에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¹⁾

한편에서는 유사한 이유로 영국의 대중 감시 체계(mass surveillance system) 역시 상당히 발달하였다. 예를 들면 영국은 과거 북아일랜드 독립 운동과 관련한 일련의 테러 때문에 다양한 감시

체계를 발달시켰다. 대표적으로는 자동 번호판 인식 시스템(Automatic Number Plate Recognition) 또는 CCTV 네트워크를 통해 사실상 실시간으로 자동차 및 용의자들을 추적할 수 있다.²⁾

이와 같이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하여 영국 경찰은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 권한을 신중히 행사함으로써 균형을 잡아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은 90년대 후반부터 급속도로 와해되기 시작했다. 특히 2000년대에 영국에서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영국에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대테러 정책은 경찰권의 전반적인 남용으로 이어졌다. 더 나아가 이후에 반전 운동 및 반신자유주의 운동에 경찰의 대응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특히 EU 체계에서 영국의 집회 및



1) 김종철, 영국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서강법학, 11권 제1호(2009) 참고.

2) The Guardian, Big Brother Traffic Cameras Must Be Regulated, Orders Home Secretary (7 July 2010) available at <http://www.guardian.co.uk/uk/2010/jul/04/anpr-surveillance-numberplate-recognition> (retrieved 11 September 2010).

시위 진압 관행은 유럽인권조약(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에 저촉된다는 법적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³⁾

급기야 지난 2009년 런던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영국 경찰이 집회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였다.⁴⁾ 결국 영국 내무부는 경찰 감사관(Her Majesty's Inspectorate of Constabulary, 약자 HMIC) 및 의회의 인권합동 위원회(The Joint Committee on Human Rights)의 권고를 받아들이면서 집회 및 시위 관련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한 문제 중에서 사진 채증 및 증거 수집의 문제는 영국 경찰의 집회 및 시위 정책, 대중 감시 체계와 그에 따른 인권 문제가 모두 연관되는 문제로 부각되었다.

II. 사진 채증 및 증거 수집의 체계 및 논란

영국에서 집회 및 시위의 사진 채증은 전방 첩보반(Forward Intelligence Team 약자로 FIT)과 증거 수집반(Evidence Gathering Team, 약자로

EGT)이 담당한다. 이 두 조직은 사실상 성격이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런던 이외의 지방 경찰청의 경우에는 이 두 팀을 하나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⁵⁾

1. 전방 첩보반(Forward Intelligence Team)

전방운용팀은 1990년 초에 런던 수도경찰청(Metropolitan Police Service, 약자로 MPS) 공공질서부(Public Order Branch of the Metropolitan Police) 소속의 공공질서 첩보단(Public Order Intelligence Unit, CO11) 산하에 구성되었다. 처음에 이들은 축구장 등 스포츠 행사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훌리건을 단속하는데서 시작했다. 하지만 1996년 이후에는 사냥 반대론자(hunt saboteurs) 또는 정치 집회 및 시위자들로 감시 범위를 확장시켜 왔다.⁶⁾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약 310명의 전문 전방 첩보반 요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 약 3분의 2는 런던 수도경찰청 소속이다. 전방 첩보반은 일반적으로 증거 수집반과 함께 작전을 수행한다. 이 전방 첩보반은 일반적으로 2인 이상의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이 조



3) DLLM Mead, *The New Law of Peaceful Protest: Rights and Regulation in the Human Rights Act Era* (Hart, Oxford 2010) 참고.

4) The Guardian, Man Dies during G20 Protests in London (2 April 2009) available at <http://www.guardian.co.uk/world/2009/apr/02/g20-protests-man-dies-london> (retrieved 11 September 2010).

5) Her Majesty Inspectorate of Constabulary, *Adapting to Protest - Nurturing the British Model of Policing* (Her Majesty Inspectorate of Constabulary, London 2010) p.127, foot note 27 available at www.inspectorates.homeoffice.gov.uk/hmic.

6) FITwatch, FIT - Role, available at <http://fitwatch.org.uk/forward-intelligence-teams/fit-the-role> (retrieved 2010 11 September) 참조.

를 이루어 활동을 하는데, 이들은 시위 현장에서 카메라 또는 캠코더 및 녹음기 등을 사용하여 군중의 동향 및 법질서 위반 행위와 관련 증거 수집을 담당한다. 이들은 작전 수행 내내 정복으로 근무를 하는데, 일반 경찰관과 확연하게 눈에 띄는 형광 재킷 등을 착용한다.⁷⁾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전방 첩보반에 대하여는 그동안 명확한 역할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다. 이에 최근 경찰 감사관은 전방 첩보반의 목적과 역할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⁸⁾

- 1) 공공질서 침해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그룹 또는 개인의 신원 파악
- 2) 정보 또는 첩보를 수집하는 조직 또는 개인들과의 연락
- 3) 지휘관에게 작전 관련 자원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전개되도록(deployed) 실시간 정보를 제공
- 4) 카메라, 비디오 또는 다른 기술 장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관측 및 통신을 하고 이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
- 5) 용의자의 신원 확인을 하려는 다른 경찰관들과 통신 유지

- 6) 공공건물, 역사, 버스 및 주차장 및 쇼핑센터 등에서 유력한 용의자의 신원 확인 및 수색
- 7) 유력 참가자의 신원 확인을 위한 집회 조직, 회합 그리고 해산 지역의 감시 활동
- 8) 대오 이탈 그룹에 대한 신원 확인 및 필요한 경우에 추적
- 9) 정보 수집 및 사진 채증을 통해 시위자들의 신원 확인
- 10) 참가자 및 차후 사건에 대한 정보 수집

2. 증거 수집반(Evidence Gathering Team)

증거 수집반은 집회 및 시위 도중의 범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다. 증거 수집반은 폭력 및 질서문란 행위가 예상되거나 실제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파견된다. 사건 발생 이전과 관련하여 이들의 활동은 주로 집회 참가자들의 이미지를 비롯한 각종 관련 증거 수집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이때 녹화된 내용은 향후 실제 기소 과정에서 범법행위를 한 당사자에 관한 영상증거들과 대조하는데 사용된다. 또한 증거 수집반에 의해 사건 발생 후에 수집된 집회 영상들은 피해 상황 등을 보여줌으로써 기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해당 집회 및 시위가 지역 공동체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증명하는데 증거로 사용된다.⁹⁾



7) Her Majesty Inspectorate of Constabulary, *Supra* note 5, p.128.

8) 이하 *Ibid.*, p.129.

9) *Ibid.*, p.128.

3. 집회 및 시위에서 사진 채증 활동에 관한 논란

사진 채증 및 증거 수집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전방 첩보반의 활동이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동안 영국 경찰 당국은 전략적 필요성에 의해 공공질서 유지 행위의 일환으로서 전방 첩보반을 운용하였다. 하지만 시민 단체로부터 사실상 집회를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부당하게 개인 정보를 침해한다는 비난에 직면하였다. 특히 이들은 주로 범법 행위를 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추적하여 감시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집회 및 시위 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¹⁰⁾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사진 채증 활동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예를 들어서 2008년 어느 환경 집회에서 전방 정보팀에 의해 채증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두 명의 여성운동가들이 문제의 경찰관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활동가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¹¹⁾ 한편 2010년에는 세 명의 FITwatch 활동가들이 집회에 참가자를 촬영하는 전방 첩보반의 활동을 방해했다는 내용으로 기소가 되었지만 법원은 기소사항을 인정하지 않았다.¹²⁾

특히 최근에는 영국의 대표적인 신문언론인 가디언(The Guardian)이 전방 첩보반의 운용 실태를 공개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특히 지금까지 전방 첩보반에 의해 수집된 정보가 런던 경찰청이 운용하는 범죄인 정보 데이터베이스(Crimint Database)에 저장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논란거리였다. 이들 정보들은 구체적으로 개인이 어떠한 행사에 참여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분류되어 보관되었다. 또한 집회 참가자들의 사진들은 이후 집회 및 시위에서 잠재적 용의자들을 식별할 수 있는 식별카드(spotter cards)라고 불리는 목록을 만드는데 사용되기도 하였다.¹³⁾



- 10) Ibid., p.127; 전방 첩보반에 대한 비판적인 시민단체로는 FITwatch를 들 수 있다. FITwatch 홈페이지(<http://fitwatch.org.uk/>) 참고.
- 11)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문 가디언의 관련 기사 참조. The Guardian, Video Shows Surveillance Protesters Bundled to Ground by Police (23 June 2009) [available at](http://www.guardian.co.uk/environment/2009/jun/21/kingsnorth-protester-arrests-video-complaint) <http://www.guardian.co.uk/environment/2009/jun/21/kingsnorth-protester-arrests-video-complaint> (retrieved 11 September 2010); The Guardian, Fit Watch Campaigners Describe How They Were Arrested and Bundled to the Ground (21 June 2009) [available at](http://www.guardian.co.uk/environment/2009/jun/21/fit-watch-police-surveillance-val-swain-emily-apple-arrests) <http://www.guardian.co.uk/environment/2009/jun/21/fit-watch-police-surveillance-val-swain-emily-apple-arrests> (retrieved 11 September 2010).
- 12) London Evening Standard, Protesters' Rights Were Violated by Met Surveillance (28 July 2010) [available at](http://www.thisislondon.co.uk/standard/article-23860752-protesters-rights-were-violated-by-met-surveillance.do) <http://www.thisislondon.co.uk/standard/article-23860752-protesters-rights-were-violated-by-met-surveillance.do> (retrieved 11 September 2010).
- 13) 이에 대한 내용은 The Guardian, Revealed: Police Databank on Thousands of Protesters (7 March 2009) [available at](http://www.guardian.co.uk/uk/2009/mar/06/police-surveillance-protesters-journalists-climate-kingsnorth) <http://www.guardian.co.uk/uk/2009/mar/06/police-surveillance-protesters-journalists-climate-kingsnorth> (retrieved 11 September 2010); The Guardian, Caught on Film and Stored on Database: How Police Keep Tabs on Activists (7 March 2009) [available at](http://www.guardian.co.uk/uk/2009/mar/06/police-surveillance-database-activists-intel) <http://www.guardian.co.uk/uk/2009/mar/06/police-surveillance-database-activists-intel>

III. 법원 판례 (Wood v Commissioner of Police for the Metropolis 사건)

명확한 법적 기준과 근거없이 작전상의 필요성 때문에 운영되어 오던 전방 첩보반은 2008년에 본격적으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된다. 2008년 Andrew Wood라는 한 무기 거래 반대운동가가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경찰의 직접적 감시 관행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해당 사건의 원고인 Wood는 무기 박람회 개최하는 Reed Elsevier사의 경영 방침에 항의시위를 하였다. 이 항의시위와 관련하여 Wood는 경찰이 자신을 촬영하였으며, 이러한 사진 채증 행위에 의해 자신의 프라이버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에 대하여 고등행정법원(The High Court of Justice, Queen's Bench Division, Administrative Court)은 경찰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동법원은 경찰의 사진 채증은 영국 보통법상의 정당한 경찰권 행사라고 판시하였다.¹⁴⁾

항소법원(Court of Appeal) 역시 집회 및 시위

의 질서유지라는 일반적 경찰 행위의 측면에서 사진 채증 자체가 위법은 아니라고 선언하였다. 하지만 유럽 인권조약 제8조¹⁵⁾와 관련하여 사진 채증 행위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즉, 동법원은 사진 채증과 채증된 증거의 저장 및 유지를 면밀하게 구분하고 있다.¹⁶⁾ 이에 따라 전방 첩보반에 의해 수집된 사진 및 영상 자료들은 사안별로 수집될 수 있을 뿐이며, 어떠한 정보도 범죄인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정보 처리·저장 과정 속에서 차후의 범죄 수사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핵심적 쟁점은 과연 경찰의 사진 채증 및 보관의 활동이 유럽 인권조약 제8조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했는가 하는 문제였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유럽 인권조약 제8조의 인간의 “사적 그리고 가정적 삶에 대한 존중”(respect for his private and family life)이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이다.¹⁷⁾ 원칙적으로 유럽 인권조약상의 프라이버시권은 개인의 성명, 사진



ligence (retrieved 11 September 2010); The Guardian, Spotter Cards: What They Look like and How They Work (25 October 2009) available at <http://www.guardian.co.uk/uk/2009/oct/25/spotter-cards> (retrieved 11 September 2010).

14) Wood v The Commissioner of Police for the Metropolis, [2008] EWHC 1105 Admin.

15) 유럽 인권조약 제8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Article 8 – Right to respect for private and family life

1. Everyone has the right to respect for his private and family life, his home and his correspondence.
2. There shall be no interference by a public authority with the exercise of this right except such as is 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is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in the interests of national security, public safety or the economic well - being of the country, for the prevention of disorder or crime, for the protection of health or morals, or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16) Wood v Commissioner of Police for the Metropolis, [2009] EWCA Civ 414.

17) 영국 인권법(Human Right Act 1998)은 일종의 한국 헌법상의 기본권 목록과 유사한데, 동법은 유럽 인권조약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영국 인권법을 통해 유럽 인권조약의 위반 여부를 다룰 수 있다.

과 같은 개인의 정체성에까지 확장된다. 이를 통해서 동조항은 자유의 기초가 되는 개인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¹⁸⁾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유럽 인권조약 8조의 적용 범위를 확정하는 세 가지 요건을 제시한다. 즉 i) 개인의 자율성을 위협하는 해당 조치가 “특정한 정도의 중대성”(a certain level of seriousness)이 있어야 하며 ii) 개인은 이와 관련하여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 기대”(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를 향유하고 있어야 한다 iii) 제8조 제1항의 범위는 제8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사진을 찍는 행위는 다음과 같이 “불편한 상황”(aggravating circumstance) 제외하고 그 자체로는 유럽 인권조약 제8조 제1항의 위반행위가 되지 않는다.¹⁹⁾ 다르게 말하면 사진 촬영과 관련한 정황에 따라서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인지 사진 촬영 자체가 무조건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논리이다. 물론 판례는 사진 촬영이 인권 침해가 되는 불법적인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급박한 추적, 직접적인 대치, 거칠게 밀고 당기거나, 당해 원고의 가정에 예고없이 들이닥치는 행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진 촬영을 한다면 유럽 인권조약 제8조 상의 프라이버시권 위반이 될 것이다. 또한 피사체가 심각하게 확대

를 당하거나 폭행을 당하는 경우 또는 위협이나 스트레스를 받는 행위를 할 경우에도 위법한 사진 촬영이 된다고 한다.²⁰⁾

판례는 이와 같은 사진 촬영과 관련한 프라이버시의 개념적 한계를 명확히 한 다음에 해당 경찰 작용의 위법성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우선 판례는 경찰의 사진 채증 자체는 무조건 유럽 인권조약 제8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힘들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서 i) 사진 촬영이 집회 시위와 같이 개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적인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어야 하며 ii) 향후 위법행위에 대한 향후 조사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시위 자체의 성격 및 개인들의 행위를 기록하기 위해서 사진 촬영을 해야 한다 iii) 이미지 내의 피사체에 대하여 이름이 기재되든가 경찰의 정보 처리 시스템에 저장되지 아니한다는 의미에서 익명화 되어야 한다.²¹⁾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는 한에 있어서 해당 사진 채증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 행위라 볼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원고의 경우 그의 사진 이미지가 아무런 동의나 정당성없이 경찰에 의해 명확하지 않은 목적으로 촬영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해당 사건에서는 경찰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법규를 준수하며 집회 및 시위를 하고 있던 원고를 촬영하



18) Wood, *supra* note 16, paras. 21-22.

19) *Ibid.*, para. 36.

20) *Ibid.*, para 34.

21) *Ibid.*, paras. 40-41.

고 그 자료를 보관하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경찰 행위는 원칙적으로 유럽 인권조약 제8조의 고려 대상이 된다고 실시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러한 경찰의 행위는 유럽 인권조약 제8조가 보호하고 있는 개인적 공간과 그의 완결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앞서 실시한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3대 요건 중에서 경찰의 사진 촬영이 상당한 정도의 심각성을 야기하며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을 것이라는 원고의 합리적 기대를 침해하고 있다고 한다.²²⁾

물론 이러한 침해 행위는 유럽 인권조약 제8조 제2항의 정당화 사유에 의해 그에 따른 침해가 정당화 될 수 있다. 동 조항에 따르면 특정한 경우에 프라이버시 침해가 국가의 정당한 행위로 인정된다. 그에 따르면 국가의 행위는 법에 따라 (“in accordance with the law”) 국가 안보, 공공 안녕 또는 국가의 경제적 복지 또는 경찰권 행사 및 민주사회의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 제한을 한다. 이 경우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 관문으로서 재판부는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해당 사안을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필요성에 대해 재판부는 네 가

지 고려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²³⁾ 즉 i) 해당 권리의 특성(the nature of the right in issue) ii) 개인에게 있어 권리의 중요성(the importance of the right of the individual) iii) 침해의 특성과 정도(the nature and extent of the interference) iv) 침해의 목적(the objective of the interference)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실시하고 있다. 우선 항소법원은 사진 채증 행위 자체는 범죄의 탐지 및 예방의 차원에서 영국 보통법 논리에 따른 합법적인 경찰행위임을 확인하고 있다.²⁴⁾ 또한 해당 행위의 목적이 유럽 인권조약 제8조 제2항의 정당화 사유에 포함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²⁵⁾

그런데 동법원은 문제가 되는 경찰관의 행위를 사진의 촬영과 촬영된 사진의 보관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있다. 여기서 사진의 보관 역시 사진 채증과 마찬가지로 정당화되는 개별적 사유가 있으며 하며 그 침해의 정도는 비례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다시 말해서 사진 채증의 정당성이 사진의 보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기서 사진 보관과 관련한 정당성의 정도는 사안에 따라 다른데, 테러 또는 심각한 범죄의 경우와 달리 일반 집회의 경우에는 좀더 높은 정도의 정당성을 요청한다.²⁶⁾ 범죄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범죄행위를 했다는 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2) Ibid., para. 46.

23) Ibid., paras. 83-84.

24) Ibid., para. 55.

25) Ibid., para. 48.

26) Ibid., para. 84.

고 촬영된 사람의 사진을 유지하고 보관하는 행위는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소지가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²⁷⁾

이에 따라 항소법원은 다음의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권리침해가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하고 있다.

우선 전방 첩보단이 사진 채증을 하는 주요 이유는 범죄 예방을 위한 첩보 행위가 아니라 범죄 행위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필요한 증거 수집에 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수일간의 사진을 보관하는 경찰의 관행은 당일의 범죄자를 식별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정당한 직무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한다. 또한 불법적 행위를 했던 사람과 원고의 단순한 관계가 채증 사진을 장기 보관하는데 필요한 법적 정당성을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한다. 더욱이 재판부는 원고가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법행위를 일으킨 관련 기소 기록이 없으며, 이후에 그가 몇 개월 안에 범죄행위를 할 것이라는 어떠한 합리적인 우려 또한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동 조항은 비례성 위반으로 유럽 인권조약 제 8조의 위반이 있었음을 확인한다.²⁸⁾

해당 사안에서 경찰 측에 당해 사안의 원고의 사진 이미지는 보관되지 않았다. 하지만 항

소법원은 개인 데이터의 보관 및 저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첨언을 하였다. 정보의 보관 및 저장은 그것이 어떻게 얻어졌건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상관없이 개인의 사적 삶에 대한 유럽 인권조약 제8조의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²⁹⁾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았거나 용의 선상에 없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보관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³⁰⁾

III. 영국 집회 및 시위 현장의 사진 채증에 관한 개혁

이후 2009년 G-20 런던 정상회의의 치안유지 행위에 관한 보고서에 대하여, 경찰 감사관(Her Majesty's Inspectorate of Constabulary)은 집회 시위에 대한 전방 첩보반의 일상적 운용은 근본적으로 프라이버시 문제를 제기하며 특히, 팀의 역할에 대하여 혼선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전방 첩보반 및 정보 수집반이 자신의 법적 권한과 의무를 정확히 인지하고 정당하게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



27) Ibid., para. 85.

28) Ibid., paras. 89-90.

29) Ibid., para. 85.

30) Ibid., para. 100.

적하고 있다.³¹⁾

이에 따라 감사관의 보고서는 집회의 사진 채증 활동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권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영국경찰서장연합회(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 약자로 ACPO)와 국립수사진홍원(National Policing Improvement Agency, 약자로 NPIA)으로 하여금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 훈련 프로그램에서 전방 첩보반의 기능과 해당 팀이 작전과 관련한 정확한 전술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³²⁾

또한 감사관은 내무부(The Home Office)로 하여금 집회 시위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 또는 다른 경찰 기관에 의해 획득된 사진 자료의 유지 및 대조에 관한 법적 틀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였다.³³⁾ 이와 더불어 의회의 인권합동위원회(The Joint Committee on Human Rights)는 이 판결과 관련하여 사진의 보관 및 저장은 사진 촬영을 당한 사람이 해당 범죄에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명확한 근거에 따라 정당화되며, 경찰은 이에 따라 자신들의 정책과 절차들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런던 수도경찰청 CO11은 해당 판결에 따라 해당 부서가 보유하고 있던 사진 채증물의 40%를 폐기하였다. 또한 영국 내무부(The Home Office)는 전방 첩보반의 운용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³⁴⁾

김 연 식

(영국주재 외국법제조사원)



31) Her Majesty Inspectorate of Constabulary, *supra* note 5, p.133.

32) *Ibid.*, p.127.

33) *Ibid.*, p.134.

34) The Guardian, (25 November 2009) Aggressive Policing of Protests Condemned in Post - G20 Inquiry available at <http://www.guardian.co.uk/politics/2009/nov/25/police-could-lose-public-consent> (Retrieved 11 September 2010).